



## 업무 제휴 협약서

2015년 6월 00일자로 다음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남 나주시 교육길 35 (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

현대삼호중공업(주) 호텔현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1 (이하 “호텔현대목포”)

###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호텔현대목포” 상호간의 상호 공동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제휴서비스 대상)

본 협약서 상의 제휴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본 협약에 따른 제휴서비스 대상인 “호텔현대목포” 이용고객으로 한다.

### 제 3 조 (제휴서비스 관련)

1. “호텔현대목포”는 본 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하기 2항의 제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호텔현대목포”는 하기 제휴서비스 관련한 클레임 발생시 최대한 신속, 성실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단, 제휴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고객민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호텔현대목포”가 상호 협력하여 처리한다.

2. “호텔현대목포”가 제공하는 제휴서비스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1 > 제휴서비스

##### ▷ 호텔현대목포 객실료 할인

정상가 기준 주중 40% 할인, 주말 30% 할인, 성수기 20% 할인

단, 위 할인혜택은 다른 혜택과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음

주중 : 일 ~ 목요일 /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연휴(마지막 날 제외) /

성수기 : 7.25 ~ 8.15, 12.31

#### < 2 > 대상

##### ▷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직원으로 사원증을 지참, 제시하는 고객

3.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호텔현대목포”는 이메일 또는 Fax 등으로 본 협약에 의한 제휴서비스 외의 이벤트 등 기타 제휴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 협의 하에 위와 같은 기타 제휴서비스 제공에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4 조 (예약 및 대금정산)

본 협약에 의해 객실을 예약 이용하는 경우 대표번호(061-463-2233)로 문의하여 예약을 접수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업무제휴 내용을 사내홍보망을 이용하여 홍보하며 임직원이 이용할 수 있게 협조하며, 임직원의 객실 이용대금은 “호텔현대목포”가 이용고객에게 직접 청구한다

#### 제 5 조 (협약 기간)

본 협약에 의한 제휴서비스 제공기간은 제휴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위 협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은 동일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 제 6 조 (홍보)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호텔현대목포”는 상대방과 사전 협의하여 각 사가 제작하는 제작물 및 광고물에 각 사의 비용 부담으로 본 협약에 의한 제휴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호텔현대목포”는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상대방의 상호, 로고, 상표 등을 본 협약서에 명기된 목적 이외의 영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내부 홍보망을 이용하여 전사적으로 홍보하여 “호텔현대목포”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한다.

#### 제 7 조 (비밀유지)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호텔현대목포”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내용이나 회원정보 및 기타 영업상 비밀 등 일체의 정보를 상대방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전 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혹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 위반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은 물론 이와 관련한 형사상의 처벌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본 조는 본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 제 8 조 (손해 배상)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호텔현대목포”는 상호합의 없이 본 협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 회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위반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및 제3자,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관련 법령이나 감독당국의 규제 등으로 이와 달리하여야 할 불가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9 조 (협약 내용의 변경 및 변경 사항의 통지)

1.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호텔현대목포”는 필요한 경우 제휴내용을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호텔현대목포”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협약체결 시 제출된 일체의 서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변경사항을 서면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0 조 (협약 해지)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기간 중이더라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호텔현대목포”는 본 협약을 서면으로 해지 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 등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대방이 강제집행(가입류, 가처분 포함)을 받거나 경매신청을 받았을 경우
3. 쌍방간의 합의 없이 일방이 본 협약 상의 제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호텔현대목포”가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그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가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해당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및 제도나 감독기관의 유권해석 등 본 협약과 관련한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본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경 요구 및 이에 관한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 제 11 조 (분쟁 해결)

1.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법령의 규정 및 관습에 따른다.
2. 본 협약의 각 조항의 해석상 쌍방간에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쌍방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며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3.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호텔현대목포”的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 12 조 (신의성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호텔현대목포”는 상대방의 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상호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제3자 양도 금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호텔현대목포”는 상대방의 사전 승인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 할 수 없다.

제 14 조 (불가항력 면책)

전쟁, 폭동, 반란,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본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이 자연되는 경우, 양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의무이행 등을 하지 못한 당사자는 가능한 이와 관련한 상세사항과 향후 진전사항을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

제 15 조 (협약서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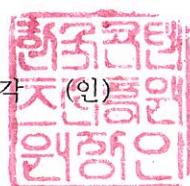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호텔현대목포”는 본 협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상호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5. 6. 12

전남 나주시 교육길 35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표이사 송 성 각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1

현대삼호중공업(주) 호텔현대

대표이사 하경진

위대리인 총지배인 오명규

